

# 심 사 보 고 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2
----------	-----

2022. 11.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1월 23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가. 제안사유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설 이용허가 등 시설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3조제2호·제3호)
- 시설 이용 신청, 변경·취소 및 허가의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 및 서식 정비·신설(안 제4조 및 별지 제1·2·3호서식)
- 이용료의 납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대부료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문 정비(안 제7조제3항, 제8조 및 별표 3)

##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개정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며, 시설 이용허가 등 시설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여성플라자는 공공시설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 "사용자"를 "이용자", "이용료"로 개정하는 것은 적합함.
- 안 제4조는 시설의 이용 신청과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는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 및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별지 제1·2·3호서식은 안 제4조에 따른 시설 이용·변경·취소 및 이용료 면제 신청 서식으로, 용어 정의 및 관련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합함.

- 안 제5조는 이용료 납부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 납부 면제 대상에 도의회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제2항제1호), 도 출자·출연기관이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제2항제3호),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제2항제4호)를 신설함.
  - 제2항제1호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제2항제3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봄.  
제2항제4호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 4. (생략)

⑥ ~ ⑦ (생략)

- 안 제6조부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 및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는 일반재산에 한정하여 대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8조는 적합하지 않은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 공유재산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자”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 허가)”를 “(시설의 이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을 “개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를“(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을 “이용료를”로,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제2항에 따라 이용료”로, “구두 또는 서면”을 “서면”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여성 단체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  
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  
용하는 경우
4.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의 제목“(사용료의 반환)”을“(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을 “이



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자가 사용”을 “이용자가 시설 이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 입주)”를 “(시설 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도내”로,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 내”를 “도내”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을 “(이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및”을 “이용자 및”으로, ““사용자 등””을 ““이용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외의 목적으로”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권”을 “이용권 또는 사용권”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을 “(시설의 이용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허가를 취소”를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시설 이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허가”를 “시설 이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거”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의 구조 등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회 연속 연체한 경우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사용자 등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을 “이용자등은 이용 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 등이”를 “이용자등이”로, “사용자 등으로부터”를 “이용자등으로부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이용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등은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설의 사용자 등이”를 “이용자등은”으로, “플라자 시설을 파손하거나,”를 “시설을 파손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 등은 제13조”를 “이용자등은 제13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이용허가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용료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물명	기 준	금 액	냉·난방비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	30,000
문화이벤트홀	1회/2시간	40,000	25,000
다목적실	1회/2시간	40,000	25,000
강 의 실	1회/2시간	20,000	20,000
영상미디어실	1회/2시간	20,000	20,000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 및 주간(09:00~18:00) 외 시간에는 기준 금액의 20% 가산
2.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가산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이용예정일 전일	반환하지 않음

<b>시설 이용허가 신청서</b>		담당자	팀 장	양성평등 가족정책관	결 재
1. 시설 명					
2. 이용 일 시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3. 이용예정인원	명	4. 이용목적			
5. 이용자(개인, 단체 또는 법인)					
주 소			단체명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전 화	
6. 시설이용료					
이 용 료	원	내역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b>시설 이용 허가증</b>					
1. 신청자 :                          귀하					
2. 이용일시 :					
이 용 료	원	내역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이용료 면제 신청서

허가 번호				
이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이 용 구 분	기본시설			
	부대시설장비			
이 용 기 간				
이 용 목 적				
행사(교육) 내용				
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면제를 신청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사용”이란 각종 사업·행사·문화·학술·교류·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p> <p>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4. (생 략)</p> <p>제4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라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이용자”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3. “이용료”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설의 이용허가) ① ----- ----- ----- 개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p> <p>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일정이</p>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이용료를 -----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도 단위 여성 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 도지사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7조(시설 입주) 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여성 단체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4.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③ ----- 제2항에 따라 이용료-----  
서면-----  
-----.

제6조(이용료의 반환) -----  
-----  
-----  
이용료-----  
-----.

1. -----  
----- 이용-----  
--
2. 이용자가 시설 이용-----  
--

제7조(시설 입주 등) ① -----  
----- 도내-----  
-----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여성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도 내 각 시·군을 총괄하는 도 단위 여성단체

2. ~ 4. (생략)

② (생략)

<신설>

제8조(대부료의 납부 및 반환 등)

①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예정 단체 및 개인이 입주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는 -----  
-----.

1. -----  
----- 도내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반환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사용자 및 입주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3. (생략)

제11조(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생략)
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이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이용자 및 ----- “이용자등”-----  
-----  
-----.

1. -----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2. ----- 이용권 또는 사용권-----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의 이용 제한 등) ① -----  
-----  
-----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  
-----.

1. -----  
----- 시설 이용허가-----
2. (현행과 같음)
3. 시설 이용허가-----  
-----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용도의 사용 및 구조변경을 임의로 하거나, 대부료 및 관리비 등을 3회 연속 연체한 경우  
<신설>

제12조(원상회복) ① 사용자 등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  
----- 이용-----  
--

② -----  
-----  
-----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거-----  
-----.

1.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구조 등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회 연속 연체한 경우

제12조(원상회복) ① 이용자등은 이용 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  
----- . 다만, 도지사가 ---  
-----.

② ----- 이용자등이 -----  
-----  
-----  
----- 이용자  
등으로부터 -----.

제13조(사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설의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플라자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제13조 위반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13조(이용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등은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등은 ----- 시설을 파손하거나 -----  
-----.

② 이용자등은 제13조에 따른 의무 -----  
-----.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